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83
----------	---------

제출일자	2017. 10. 16.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나.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다.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이내 -문화예술관람권: 2장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129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민원봉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농촌진흥과, 평생교육센터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9.21.~10.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3): 의령, 함양, 남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제10호 중 “범위 내의”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평생교육센터)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세대 지원 중일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0조제1항제8호 개정규정은 2018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2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세대를 말한다. 7. (생 략) 8.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9.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10.~11. (생 략)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	제3조(정의) ----- ----- 1.~5. (현행과 같음) 6. ----- 2년 ----- ----- 6개월 ----- ----- ----- 7. (현행과 같음) 8. ----- ----- ----- ----- 9. ----- ----- ----- ----- 10.~11.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 ----- -----	○ 전입세대 지원기준 완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u>범위 내의</u>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u>범위 내의</u> 영농 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 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u>범위 내의</u> 빈집 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 4.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민원봉사실) 5. 전입세대에 대한 20리터 45대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다만, 전입세대가 원하면 지원금액 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변경 가능) (환경과) 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평생교육센터) 7.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평생교육센터) 8. <u>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평생교육센터)</u> 9. 전입세대에 대한 5장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문화관광과) 10.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u>범위 내의</u> 지원금	----- 1. -----<u>범위에서</u>--- ----- 2. -----<u>범위에서</u>--- ----- 3. -----<u>범위에서</u>--- ----- 4. ----- ----- 5. ----- ----- ----- 6. ----- ----- 7. ----- ----- 8. <u>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평생교육센터)</u> <u>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u> <u>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u> 9.----- ----- 10. -----<u>범위에서</u>---	○ 용어순화 ○전입세대 고등학생과 형평성을 위하여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규정 신설 -남해군: 학기별 학자금 10만원(재학중 학기별 1회, 총4회, 최대 40만원) ○ 고등학교 수업료 20만9천원 지원하고 있으나 50만원 상당의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함
---	--	--

지원(평생교육센터) 11.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소관부서) <u><신 설></u>	----- 11. -----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u>	○1인세대 전입지원금 규정 신설
--	---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제20조제1항제8호)
 - 학기별 10만원(연간 2회)
- 1인 전입세대 지원(제20조제2항)
 -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전입대학생	1	1	1	1	1	5
	1인 전입세대	128	128	128	128	128	640
	계	129	129	129	129	129	645

※ 산출기초: 전입세대 대학생 5명(추정) × 20만원(연간) = 1백만원 (* 현재 고등학생 13명 지원중)
1인 전입세대 800명 × 16만원(연간) = 128백만원

3. 관련 의견

-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자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 영 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6.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